

타행 이체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거래처가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제공하는 타행이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타행이체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3조 (송금 가능 계좌)

타행 송금 가능 계좌는 보통, 저축, 당좌예금으로 정한다.

제4조 (이체의 처리)

- 고객이 의뢰한 송금은 요청 당일 처리한다. 다만, 컴퓨터등 전산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는 장애복구후에 이체 처리한다.
- 자기앞수표로 입금이체 한 경우에는 동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추심절차가 완료된 때 출금이 가능하다.

제5조 (출금이체의 한도)

일일 최대 출금이체한도는 은행 고객계좌의 인출가능금액 중 은행이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 (수수료)

타행 이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7조 (거래의 성립 등)

- 고객이 지시한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때로 한다. 이 때 은행이 거래지시에 포함된 출금계좌번호, 서명 또는 인감 등을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타행이체를 처리한 경우, 수취계좌번호 기재오류 등 고객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거래 오류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 등에 의한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은행이체서비스가 일시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은행이 입금오류, 입금불능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고객이 사전 신고한 연락처로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전화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은행에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